

## 사업시행권 등 포기각서

### 량대부 주식회사 귀중

(이상 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 대출약정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본 사업시행권 등 포기각서(이하 “본 포기각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10번지(이하 “본건 사업부지”) 빌라 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관한 신축 공사의 공사비 일부 금융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차주로서 주식회사 두정(이하 “차주”), 대주로서 량대부 주식회사(이하 “대주”), 시공사 겸 조건부채무인수인으로서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이하 “시공사”라 하고, 차주·시공사를 총칭하여 “각서인(들)”이라 합니다) 등 사이에 2018년 11월 16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이하 “대출약정(서)”이라 하며,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과 관련됩니다.

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서인들은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대출약정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이하 “포기사유”), 각서인들은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차주 및 시공사가 본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보유하는 인·허가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 등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하 “사업시행권”) 및 본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유하는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하여 대주로부터 지정 받는 자(이하 “사업인수인”)에게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지위, 의무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1. 본건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상의 권리



는 경우 각서인들은 지체 없이 동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포기각서 등과 관련하여 각서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 전까지 각서인들은 새로운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 해당 서류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7) 아울러, 본 포기각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첨부 양식에 의거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대주에게 제출하고, 차후 새로운 사업주체와 건축주를 정하여 위 동의서에 보충 기재할 권한을 취소불능 조건으로 대주에게 부여합니다.
- (8) 본 포기각서에 따른 각서인들의 사업시행권 등 권리의 포기는 대출약정의 모든 당사자 및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각서인

주식회사 두정

서울 송파구 [redacted]

대표이사 우 [redacted]



각서인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

서울 송파구 [redacted]

대표이사 임 [redacted]

